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1716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배년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2. 7.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7,272,10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7.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4,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별지